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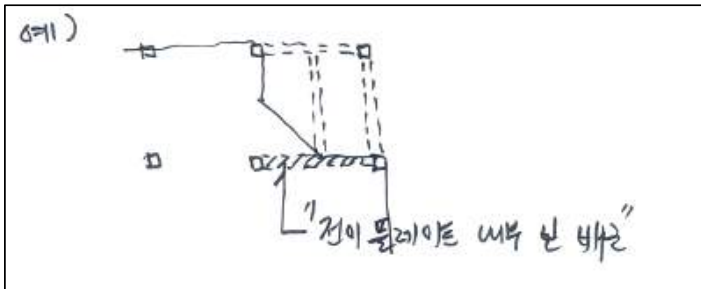
심의일자	2017. 9. 8.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영등포1의3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/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-1		
의결번호	2017-구조안전 12-2	심의결과	조건부보고완료

[심의 내용] 구조안전 심의

-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## < 구조안전 분야 >

- 슬래브 처짐을 고려하여 비내력벽을 내력벽으로 변경 바람.
- 단위세대 스팬이 커서 사용성이 떨어지므로 LW1 비내력벽체가 수직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 검토하고, 벽체(59A-W14, 84T-W2,W3,W10)는 약축모멘트를 고려하고 기둥식 배근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배근을 검토 바람.
- 기초 주근의 직경을 상향조정하기 바람.
- 550Mpa 초과하는 철근의 이음정착 길이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지 검토 바람.
- SRC기둥의 쉬어스터드를 기준에 의거 충분히 하중이 전달되도록 배치 바람.
- 102동 지상층 코어 주변 설비공간(AD, PD, EPS 등)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철근량, 배근간격 등을 검토하기 바람.
- 지상3층에서 전이플레이트와 일반슬래브+보가 만나는 부분의 응력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근 상세를 추가하기 바람.



- 102동 특별풍하중 적용 검토에서 적용된 평면치수를 확인하기 바람.
- 단위세대 슬래브 배근 구조도면에 오기가 있으므로 구조설계자가 오기 여부를 반드시 검토·확인하기 바람.
- 전이플레이트 뚫림 전단 검토 시 최신기준으로 검토하기 바람.
- 구조도면의 일반사항에 내진배근의 범위 및 상세에 대해 명확히 표기하기 바람.
- 구조도면에 대해 구조기술사가 검토 및 날인하기 바람. 끝.

2017. 09. 08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